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영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1.

발의자 : 윤영석 · 김태호 · 임종득
신성범 · 박성민 · 추경호
박대출 · 이종배 · 김미애
한기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는 291만 7,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.8%를 차지하였음. 특히,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,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음.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.

또한, 한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, 신입 혹은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채용하는 약 6만개의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은 2만7천164개로 약 45.4%에 달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1만6천372개, 3천635개로 각각 27.4%와 6.1%를 차지하여 전체 채용공고 중 서울과 경기, 인천이 78.9%에 달함. 반면, 부산 · 충남 · 대전 · 경남 · 대구 · 충북 등의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약 1.7%에서

3.2% 수준에 불과함.

또한,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.5%가 ‘인력 확보’를 꼽기도 했음.

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의 악화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방 중견·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저하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.

현재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청년,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실시하고 있음.

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의 근로자,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(안 제29조의8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27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40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45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550만원)]”을 “40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(중견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000만원)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45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700만원)]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”을 “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(중견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600만원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950만원”을 “1,2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p>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등상시근로자”라 한다)의 증가 인원 수(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<u>400만원</u>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<u>800만원</u>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<u>1,450만원</u>(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<u>1,550만원</u>)]을 곱한 금액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400만원</u>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<u>800만원</u>(중견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<u>1,000만원</u>)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<u>1,450만원</u>(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<u>1,700만원</u>)] -----</p>
<p>2.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(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 × 0원(<u>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</u>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)</p>	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</u>(중견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<u>600만원</u>)) -----</p>
<p>가. (생략) 나.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<u>950만원</u> ② ~ ⑨ (생략)</p>	<p>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<u>1,200만원</u> ② ~ ⑨ (현행과 같음)</p>